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간접노무비)

● 지원개요

소속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내용

주3회 이상 활용자는 1인당 1주에 **10만원**, 주1~2회 활용근로자는 1인당 1주에 **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기준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시차출퇴근제	10만원	20만원	120만원 (6개월간)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 (1년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업주) 유연근무 실시 이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고용센터) 승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등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을 별도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 승인

제도 도입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에 따라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유연근무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등

● 지원요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선택근무제의 경우, '2시간 이상 단축일' 이 4일이상이거나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월 30만원 지급,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지급

●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부산청 : 051-860-1926~7

051-860-2072

051-860-2100

-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 051-796-7210~5

-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 051-330-9951~5